

통감부~일제 초기 갑오개혁과 대한제국기 공문서의 분류

- 분류도장 · 참고번호도장을 중심으로 -

박성준*

1. 머리말
2. 분류도장의 문서철 분류
3. 참고번호도장의 문서철 분류
4. 맺음말

[국문초록]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면서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는 朝鮮總督府로 인계되어 課 단위의 분류체계에서 部 단위로 재분류되었지만, 그전에 몇 번의 재분류과정을 거쳤다. 재분류의 흔적은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철 표지에 찍힌 분류도장

* 경희대 강사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요 논저 : 「經理院의 驛屯土 문서 분류와 분류 체계의 변형」 『규장각』 32, 2008; 「대한제국기 공문서의 편철과 분류」 『서지학연구』 41, 2008;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의 보존기간 起算과 책정 기준」 『한국사학보』 35, 2009

과 창고번호도장에서 확인된다.

분류도장에서는 ‘部-局-課’ 행정체계에서 課를 단위로 문서철을 구분하고 분류도장을 찍고 호수를 부여하였다. 이는 대한제국기 공문서 분류체계와 동일한 것으로, 분류도장을 찍을 당시 까지도 課를 단위로 한 분류체계는 유지되었다.

분류도장은 課 단위로 구분하고 각 문서철에 호수를 부여하였지만, 課 하위단위의 분류체계는 課별로 차이가 있었다. 地稅課 문서철은 한 호수에 여러 기관이 등장하고 문서연도는 앞뒤 호수에서 중복되었고, 같은 성격의 문서철이 따로 분류되어 있었다. 關稅課와 雜稅課 문서철은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편철된 두 課의 편철 방식을 반영하여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호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문서연도와 ‘イロハ 歌’ 순서가 맞지 않았다.

갑오개혁~대한제국기에는 공문서를 課 단위로 편철하였지만, 課 하위단위의 분류규정이 없어 분류도장의 문서철 분류를 대한제국기 공문서 분류체계의 원질서로 파악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편철 방식은 문서 분류체계를 반영하므로, 편철 방식을 통해 대한제국기 課 하위단위의 분류체계를 추론해 본다면, 분류체계는 ‘課 - 거래기관’과 ‘課 - 문서연도’ 두 체계로 구분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기 공문서를 인계받고 창고에 보관하면서, 각 문서철에 창고번호도장을 찍었다. 창고번호도장은 대체적으로 각 창고별로 문서를 편철한 기관을 구분하여 문서철을 보관하였다. 각 창고의 서가에도 대체적으로 분류도장 호수 순으로 문서철을 배열하였지만, 일부 문서철은 호수가 뒤섞여 서가에 배열되어 서가와 호수 순서가 맞지 않았다. 서가에 문서철을 배열한 다음 각 문서철에 ‘イロハ 歌’ 순으로 기호를 부여했지만, 기호 역시 호수 순으로 부여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총

독부가 각 창고에 문서철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류도장의 분류체계가 해체되고 있었던 것이다.

창고번호도장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분류도장에서 각 문서철에 부여한 보존기간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존기간은 해당 문서가 지닌 역사적·행정적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창고번호도장에서는 보존기간의 구분 없이 같은 서가에 보존기간이 다른 문서철을 뒤섞어 함께 배열하였다.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면서 대한제국기 공문서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폐기해야 할 행정 문서가 아니라, 식민 통치에 필요한 ‘考古의 材料’로 취급하였다. 일반 행정문서에서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료로 문서의 가치 평가가 전환되면서, 문서철에 부여된 보존기간에 상관없이 대한제국기 공문서를 모두 동일한 대상으로 취급하여 함께 보관하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를 재정리하면서 部를 단위로 재분류함으로써 대한제국기의 課를 단위로 한 기관별 분류체계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기능별 분류의 성격도 해체하였다.

주제어: 갑오개혁, 대한제국, 조선총독부, 공문서, 문서 분류체계

1. 머리말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면서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는 朝鮮總督府 取調局(이후 參事官室)으로 인계되었고, 조선총독부는 갑오개혁~대한제국기 문서철에 도서명과 도서번호를 부여하였다.¹⁾ 이 과정에서 ‘部-局-課’ 행정체계에서 課 단위로 분

류되었던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가 部 단위로 재분류되었다.²⁾

조선총독부 참서관실에서 課 단위에서 部 단위로 재분류하였지만, 이전에 이미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는 몇 번의 재분류과정을 거쳤다. 재분류의 흔적은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철 표지에 찍힌 분류도장과 창고번호도장에서 확인된다.

분류도장은 隆熙 연간부터 1916년 사이에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를 분류하면서 찍은 것으로, 대부분 1911-1912년 사이에 찍었으며 융희년간에 찍은 것은 일부이다.³⁾ 분류도장의 항목은 保存年數·冊數·號數·期滿年月·문서보관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각 문서철에 분류도장을 찍고 호수를 부여하면서 문서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해 보존기간까지 책정한 것이다.⁵⁾

-
- 1) 서영희, 「통감부 시기 일제의 권력장악과 규장각 자료의 정리」 『규장각』17, 1994, 107-117쪽; 김태웅, 「일제 강점 초기의 규장각 도서 정리 사업」 『규장각』18, 1995, 176-186쪽
 - 2) 박성준, 「대한제국기 공문서의 편철과 분류」 『서지학연구』41, 2008a 참조
 - 3) 분류도장을 찍은 시기는 보존기간의 起算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분류도장을 처음 찍었던 융희년간에는 문서철의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起算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날인 시기는 알 수 없고, 다만 융희 연호를 통해 융희년간부터 분류도장을 찍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보존기간의 起算 시점이 문서철의 생산년도에서 보존기간을 부여한 시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존기간의 起算 시점을 통해 분류도장을 찍은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1911·1912·1916년은 보존기간의 起算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다(박성준,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의 보존기간 起算과 책정 기준」 『한국사학보』35, 2009, 263-273쪽).
 - 4) 분류도장에 관해서는 이상찬, 「규장각 소장 자료의 공문서 분류도장에 대하여」 『書誌學報』20, 1997 참조
 - 5)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 보존기간에 관해서는 박성준, 「보존기간 起算과 책정 기준」, 2009 참조

유희년간에 분류도장을 찍은 문서철은 주로 국가 재정과 관련된 탁지부 문서철이었고, 조선총독부 초기에 분류도장을 찍은 문서철은 나머지 탁지부 문서철과 내장원을 비롯한 황실 재정 관련 문서철이다. 다른 各府部院廳의 문서철에는 분류도장이 거의 찍혀 있지 않다. 분류도장이 주로 재정 관련 문서철에 찍힌 것은 일본은 대한제국을 지배하기 위해 대한제국의 국가 재정을 장악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재정 관련 문서철에 먼저 분류도장을 찍고 재분류하였기 때문이다.⁶⁾

이후 조선총독부는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를 통합하여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각 문서철에 창고번호도장을 찍었다. 창고번호도장은 분류도장을 찍은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도서번호를 부여하고 도서목록 정리를 마무리한 1916년 이전에 찍었지만 정확한 날인 시기는 알 수 없다.⁷⁾ 분류도장은 주로 재정 관련 문서철에 찍혀 있지만, 창고번호도장은 재정 관련 문서철뿐 아니라 의정부·외부 등 각부부원청 공문서철에도 찍혀 있다.

창고번호도장은 ‘倉庫番號·棚架番號·記號’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고번호는 문서를 보관한 각 창고별 번호를, 봉가번호는 창고에 있는 서가 번호를, 기호는 서가에 배열한 문서의 순서로 ‘イロハ 歌’ 순으로 기호를 부여하였다. 창고번호도장은 각 창고의 서가에 문서를 보관·배열한 순서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 역시 문서분류체계를 반영한 것이다.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는 ‘분류도장 → 창고번호도장 → 조선총독부 참서관실’ 등 몇 번의 재분류 과정을 거쳤던

6) 박성준, 같은 글, 2009, 282-285쪽

7) 조선총독부의 도서번호 부여와 도서목록 정리는 김태웅, 「일제 강점 초기의 규장각 도서 정리 사업」 『규장각』18, 1995, 참조

것이다. 조선총독부에서 課 단위에서 部 단위로 재분류하기 이전인 분류도장·참고번호도장을 찍을 당시에는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를 어떻게 분류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각 도장별 분류체계의 분석은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 분류체계의 변화과정과 함께 분류체계의 원질서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갑오개혁~대한제국기에는 공문서를 일차적으로 課 단위로 편철·분류하였으나, 課 하위단위의 분류기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분류도장의 분석을 통해 분류도장의 분류체계와 함께 갑오개혁~대한제국기에는 課 하위단위를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참고번호도장을 분석하여 문서철이 서가에 배열된 상태를 살펴보고 이것이 갖는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분류도장의 문서철 분류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갑오개혁~대한제국기 문서철은 1책 또는 몇 책이 한 질로 묶여 도서번호와 도서명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분류 상태는 갑오개혁~대한제국기 분류체계 그대로 보존된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에서 도서번호와 도서명을 부여하고 재분류한 상태로 보존된 것이다.⁸⁾ 조선총독부는 도서번호와 도서명을 부여하고 공문서를 部 단위로 재분류하였지만, 분류도장을 찍을 당시에는 전혀 다른 체계로 분류되어 있었다.

8) 이상찬, 「공문서 분류도장에 대하여」, 1997, 50-51쪽

<표 1> 『度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奎 17880, 6책)의 분류도장 정보

내별번호	표제	保存年數	책수	호수	연호	期滿年月
6-1	農商工部公文編案	20	5	37-△	隆熙	23年 12月
6-2	農商工部公文編案	20	△	3△-△	隆熙	23年 12月
6-3	農商工部電郵費去來牒	20	9	34-1	隆熙	23年 12月
6-4	農商工部去來牒	20	9	34-3	隆熙	23年 △△
6-5	公文來去牒	10	14	262-1-ㄱ	×	53年 12月
6-6	公文來去牒	10	14	262-1-ホ	×	53年 12月

- * 이하 표에서 保存年數는 年數로, 期滿年月은 期滿으로 표기함.
- * △는 규장각 도서번호표에 가려져 확인할 수 없는 것임. 이하 같음.
- * 기만년월 53년(1920년)은 明治 연간이며, 이하 표에서 연호가 ‘×’인 것은 연호가 明治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민지기에 분류도장을 찍은 것이다.

<표 1>은 『度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奎 17880) 6책의 문서철에 찍힌 분류도장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는 6책이 한 질로 분류되어 있지만 각 문서철에 찍힌 분류도장을 보면, 각 책마다 부여된 호수가 다르고 분류도장을 찍은 시기도 융희년간(내별번호 6-1~4)과 조선총독부 초기(내별번호 6-5~6)로 구분된다. 분류도장을 찍었던 당시에는 호수 34(2책), 37(1책), 262(1책), 3△(1책)를 각 문서철에 부여하여 최소한 3종 이상으로 분류하였던 것이다.

이를 호수 34를 기준으로 재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호수 34 문서철의 도서번호와 도서명

도서번호	내별번호	도서명	年數	책수	호수	연호	期滿
奎 17880	6-3	度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20	9	34-1	隆熙	23年 12月
奎 17881	7-3	度支部内部公文來去牒	20	9	34-2	隆熙	23年 12月
奎 17880	6-4	度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20	9	34-3	隆熙	23年 △△
奎 17882	8-2	宮内府去來文牒	20	△	34-4	隆熙	23年 12月
奎 17878	7-1	軍部來去案	20	9	34-5	隆熙	23年 12月
奎 17885	2-1	掌禮院去來牒	20	9	34-6	隆熙	23年 12月
奎 17882	8-3	宮内府去來文牒	20	△	34-7	隆熙	23年 12月
奎 17884	4-1	法部來去文	20	9	34-8	隆熙	23年 12月
奎 17881	7-4	度支部内部公文來去牒	20	9	34-9	隆熙	23年 12月

현재 도서번호 奎 17880, 내별번호 6-3·6-4로 분류된 호수 34-1·34-3의 문서철이 분류도장을 찍었던 융희년간에는 9책이 한 질로 묶여 각 책별로 호수 34-1에서 34-9까지 연속된 호수가 부여된 상태로 분류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분류도장을 찍을 당시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문서철을 분류하였던 것이다. 분류도장을 찍을 당시에는 갑오개혁~대한제국기 문서철을 어떻게 분류하였는지 분류도장이 찍힌 문서류와 대장류 가운데 탁지부가 각부부원청과 거래한 왕복문서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⁹⁾

9) 대장류에 찍힌 분류도장의 분석은 박성준, 「經理院의 驛屯土 문서 분류와 분류 체계의 변형」 『규장각』32, 2008b 참조

〈표 3〉 분류도장의 호수별 분류

번호	도서번호	내별번호	거래기관	年數	책수	호수	연호	期滿	문서년월	課
1	奎 17880	6-3	度支部 司計局·府郡	20	9	34-1	隆熙	23年	1896.10~1897.12	지세과
	奎 17881	7-3	内部	20	9	34-2	隆熙	23年	1896.12~1897.7	
	奎 17880	6-4	農商工部	20	9	34-3	隆熙	23年	1897.1~1897.11	감세과
	奎 17882	8-2	宮内府	20	△	34-4	隆熙	23年	1896.8~12	지세과
	奎 17878	7-1	軍部	20	9	34-5	隆熙	23年	1896.1~11	
	奎 17885	2-1	掌禮院	20	9	34-6	隆熙	23年	1897.1~1898.12	
	奎 17882	8-3	宮内府	20	△	34-7	隆熙	23年	1897.1~1897.12	
	奎 17884	4-1	法部	20	9	34-8	隆熙	23年	1897.1~1898.1	
	奎 17881	7-4	内部	20	9	34-9	隆熙	23年	1897.8~1897.12	
	2	奎 17878	7-2	軍部	20	△	35-1	隆熙	23年	1897.1~1899.12
奎 17881		7-5	内部	20	6	35-2	隆熙	23年	1898.1~10	
奎 17884		4-2	法部	20	6	35-3	隆熙	23年	1898.3~1899.12	
奎 17882		8-4	宮内府	20	6	35-4	隆熙	23年	1898.1~1899.11	
奎 17883		4-1	平理院	20	6	35-5	隆熙	23年	1898.8~1900.4	
奎 17884		4-3	法部	20	6	35-6	隆熙	23年	1900.1~11	
3	奎 17891	4-2	全羅道·江原道	20	5	36-1	隆熙	23年	1901.4~1907.6	지세과
4	奎 17887	×	議政府	20	5	37-1	隆熙	23年	1895.9~1905.9	지세과
	奎 17877	24-13	農商工部·通信院	20	5	37-5	隆熙	23年	1897.1~1905.11	
	奎 17880	6-1	農商工部	20	5	37-△	隆熙	23年	1895.11~1896.8	
5	奎 17883	4-4	平理院	20	6	38-1	隆熙	23年	1904.3~11	지세과
	奎 17883	4-3	平理院	20	6	38-2	隆熙	23年	1901.1~1902.12	
	奎 17881	7-6	内部	20	6	38-3	隆熙	23年	1898.12~1900.11	
	奎 17883	4-2	平理院	20	6	38-4	隆熙	23年	1900.5~12	
	奎 17889	1-1	外部	20	6	38-5	隆熙	23年	1896.2~1900.12	
	奎 17886	2-1	警部	20	6	38-6	隆熙	23年	1896.1~1900.12	
	奎 17882	8-5	宮内府	20	6	39-1	隆熙	23年	1900.1~1905.10	
6	奎 17885	2-2	掌禮院	20	6	39-2	隆熙	23年	1899.1~1905.12	지세과
	奎 17876	12-11	度支部 司計局·府郡	20	6	39-3	隆熙	23年	1904.5~1905.9	
	奎 17881	7-1	内部	20	△	39-5	隆熙	23年	1895.11~1896.7	
	奎 17881	7-2	内部	20	△	39-6	隆熙	23年	1896.8~12	
7	奎 17997	4-1	議政府·各道	20	8	40-1	隆熙	23年	1897.1~1898.7	지세과
	奎 17997	4-2	議政府·各道	20	8	40-2	隆熙	23年	1899.2~1901.4	
	奎 17997	4-3	議政府·各道	20	8	40-3	隆熙	23年	1901.8~1902.1	
	奎 17890	×	漢城裁判所	20	8	40-5	隆熙	23年	1898.1~1903.11	
	奎 17888	2-2	警務廳	20	8	40-6	隆熙	23年	1901.1~1904.11	
	奎 17884	4-4	法部	20	8	40-7	隆熙	23年	1903.2~1905.12	
	奎 17878	7-7	軍部	20	8	40-8	隆熙	23年	1903.1~1905.7	
8	奎 17892	1-1	度支部 司計局·府郡	20	3	41-2	隆熙	23年	1900.1~1901.12	지세과
	奎 17881	7-7	内部	20	3	41-3	隆熙	23年	1901.1~1905.10	
9	奎 17877	24-10	宮内府·經理院·議政府·内部·外部·軍部	20	△	42-1	隆熙	23年	1906.2~1907.1	지세과
	奎 17877	24-11	法部·平理院·漢城裁判所·農商工部	20	△	42-2	隆熙	23年	1905.1~1906.2	

	奎 17877	24-12	通信管理局·統監府·要塞司令部	20	△	42-3	隆熙	23年	1906.12~1907.11	
10	奎 17995	6-3	×	20	6	43-△	隆熙	23年	1907.1~1907.12	지 세 과
	奎 17995	6-2	×	20	6	4△	隆熙	23年	1907.1~1907.12	
	奎 17995	6-4	×	20	6	4△	隆熙	23年	1907.1~1907.12	
	奎 17995	6-5	×	20	6	4△	隆熙	23年	1907.1~1907.12	
	奎 17995	6-1	×	20	△	4△	隆熙	23年	1907.1~1907.12	
	奎 17995	6-6	×	20	△	4△	隆熙	23年	1907.1~1907.12	
11	奎 17876	12-8	各道各部	永	8	110	×	×	1903.1~2	지 세 과
12	奎 17877	24-18	軍部·學部·農商工部·外部·內部·總稅務司·宮內府	永	25	260-2-卜	×	×	1896.3~6	관 세 과
	奎 17877	24-21	軍部·農商工部·元帥府·總稅務司·典圖書·慶典監理	永	25	260-2-ニ	×	×	1898.6~1900.1	
	奎 17877	24-19	軍部·宮內府·農商工部·外部·慶典監理·總稅務司·仁川監理	永	25	260-2-へ	×	×	1896.4~1897.12	
	奎 17877	24-20	軍部·議政府·宮內府·外部·內部·總稅務司·典圖書·慶典監理	永	25	260-2-ホ	×	×	1898.1~12	
	奎 17877	24-16	軍部·農商工部·外部·內部·警務廳·稅務司·總稅務司	永	25	260-2-口	×	×	1895.4~8	
	奎 17877	24-17	軍部·總稅務司·外部·內部	永	2△	260-2-チ	×	×	1895.8~1896.2	
	奎 17877	24-24	軍部·議政府·農商工部·元帥府·外部·總稅務司	永	2△	2△△	×	×	1903.1~1904.12	
	奎 17877	24-22	軍部·法部·農商工部·內部·外部·總稅務司·學部·通信院·慶典監理·三和監理	永	2△	2△△	×	×	1900.1~12	
	奎 17877	24-23	軍部·法部·農商工部·元帥府·外部·總稅務司·鐵道院	永	△	2△△	×	×	1900.12~1902.3	
13	奎 17880	6-5	農商工部	10	14	262-1-イ	×	53年	1898.1~12	잡 세 과
	奎 17877	24-3	元帥府·宮內府·內藏院·掌禮院·軍部	10	14	262-1-チ	×	53年	1900.1~1901.2	
	奎 17877	24-4	議政府·內部·農商工部·法部·通信院·警部·柏札·外部	10	14	262-1-卜	×	53年	1900.1~12	
	奎 17877	24-1	掌禮院·外部·內部·法部·學部·漢城裁判所·柏卓安	10	14	262-1-ニ	×	53年	1897.5~1899.12	
	奎 17877	24-6	宮內府·議政府·外部·軍部·內藏院·平理院·營建都監	10	14	262-1-ヌ	×	53年	1901.10~1903.11	
	奎 17878	7-3	軍部	10	14	262-1-ハ	×	53年	1898.2~1899.12	
	奎 17882	8-7	宮內府	10	14	262-1-へ	×	53年	1895.10~1897.11	
	奎 17880	6-6	農商工部	10	14	262-1-ホ	×	53年	1899.1~12	
	奎 17877	24-8	宮內府·議政府·法部·警務廳·法院·內藏院·掌禮院·農商工部·通信院·司計局·出納局	10	14	262-1-ヲ	×	53年	1904.3~12	
	奎 17877	24-5	宮內府·元帥府·外部·法部·內藏院·軍部·農商工部·通信院·警部	10	14	262-1-リ	×	53年	1901.1~12	
	奎 17877	24-2	法部·軍部·宮內府	10	14	262-1-口	×	53年	1896.12~1898.12	
	奎 17877	24-9	宮內府·經理院·農商工部·通信院·漢城府·外部·法部·平理院·警務廳·議政府·掌禮院	10	14	262-1-ワ	×	53年	1905.1~12	

* 奎 17876: 『訓令編案』, 奎 17877: 『度支部各部院等公文來去文』, 奎 17878: 『軍部來去案』, 奎 17880: 『度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奎 17881: 『度支部內部公文來去牒』, 奎 17882: 『宮內府來去文牒』, 奎 17883: 『平理

院來去文』, 奎 17884: 『法部來去文』, 奎 17885: 『掌禮院去來牒』, 奎 17886: 『警務廳來去文』, 奎 17887: 『議政府來去案』, 奎 17888: 『警部來去文』, 奎 17889: 『外部來去文』, 奎 17890: 『漢城裁判所來去文』, 奎 17891: 『通牒』, 奎 17892: 『電郵費訓令編案』, 奎 17995: 『報告書綴』, 奎 17997: 『災結請議書』.

<표 3>은 18종 70책에서 확인된 호수 34~43·260·262를 호수 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호수별 분류에서 나타난 특징은 각 호수별로 문서를 편철한 課가 구분된다는 점이다. 호수 34~43은 度支部 司稅局 地稅課, 호수 260은 司稅局 關稅課, 호수 262는 司稅局 雜稅課가 각부부원청과 거래한 문서를 편철한 문서철에 부여되었다. 분류도장을 찍을 당시에는 課를 기준으로 문서를 분류하고 호수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다만 1번 호수 34-3의 奎 17880, 내별번호 6-4 문서철은 다른 호수와 달리 課가 잡세과이다. 6-4는 잡세과가 농상공부와 거래한 1897년도 문서철로, 이 문서철에 연속된 문서철은 13번 호수 262-1-이·262-1-ホ의 奎 17880, 내별번호 6-5·6-6이다. 6-5·6-6은 잡세과가 농상공부와 거래한 1898·1899년도 문서철이다. 6-4·5·6은 잡세과에서 편철한 문서연도가 연속된 문서철이지만 6-4만 호수 34-3이 부여되었다. 6-4에 호수 34-3이 부여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면 호수는 課별로 구분되어 부여되었다.

과 단위로 구분하고 호수를 부여한 분류도장에서 과 하위단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는가. 공문서는 행정기간이 특정 시기에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유통된 기록물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과 단위로 문서를 분류하였을 경우, 과 하위단위는 업무 내용·거래 기관·문서연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과-업무 내용-거래기관-문서연도’ 또

는 ‘과-거래기관-문서연도-업무 내용’ 등 다양한 층위로 하위단위를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각 과별로 분류체계를 살펴본다.

〈표 4〉 호수 34-43 문서철의 거래기관과 문서연월

기관 호수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議政府				95.9~05.9						
議政府-各道							97.1~98.7			
							99.2~01.4			
							01.8~02.1			
宮內府		98.1~99.11				00.1~05.10				
	96.8~12									
內部	97.1~97.12									
	96.12~97.7	98.1~10			98.12~00.11	95.11~96.7		01.1~05.10		
法部	97.8~97.12					96.8~12				
	97.1~98.1	98.3~99.12					03.2~05.12			
外部		00.1~11								
					96.2~00.12					
軍部	96.1~11	97.1~99.12					03.1~05.7			
農商工部	97.1~11			95.11~96.8						
農商工部-通信院				97.1~05.11						
掌禮院	97.1~98.12					99.1~05.12				
平理院		98.8~00.4			00.5~12					
					01.1~02.12					
					04.3~11					
警部					96.1~00.12		01.1~04.11			
漢城裁判所							98.1~03.11			
司計局-府部	96.10~97.12					04.5~05.9		00.1~01.12		
府部院廳									06.2~07.1	
府部院廳									05.1~06.2	
府部院廳									06.12~07.11	
忠北稅務所										1907
全南稅務所										1907
忠北稅務所										1907
忠北稅務所										1907
忠南稅務所										1907
全南各部										1907
全南-江原			01.4~07.6							

〈표 4〉는 사세국 지세과 문서철에 부여된 각 호수별로 거래기관과 문서연월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호수별로 거래기관을 보면 호수 34에는 궁내부·내부·법부·군부·농상공부·

장례원 등 6개 기관이, 35에는 궁내부·내부·법부·군부·평리원 등 5개 기관이 있다. 하나의 호수에 지세과와 문서를 거래한 여러 기관이 섞여 있으며, 이는 나머지 호수도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호수에 여러 거래 기관이 섞여 있다는 것은 과 하위단위를 거래 기관별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래 기관을 기준으로 과 하위단위를 분류하였다면, 각 호수별로 한 기관과 거래한 문서만 분류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각 호수별로 문서연도를 보면, 호수 34의 문서연도는 1896-1898년, 35는 1897-1900년, 37은 1895-1905년, 38은 1896-1904년, 39는 1895-1905년, 40은 1897-1905년, 41은 1900-1905년, 42는 1905-1906년, 43은 1907년 이다. 호수마다 문서연도가 몇 년에 걸쳐 있으면서 앞뒤 호수의 문서연도가 중복되며 순차적이지 않다.

앞뒤 호수별로 문서연도가 중복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문서 편철 방식 때문이다. 궁내부와 거래한 호수 34·35의 문서철은 1~2년을 단위로 편철되었지만, 의정부와 거래한 호수 37의 문서철은 11년간 거래한 문서가 한 책에 편철되었다. 이들 문서철은 거래 기관을 기준으로 문서를 편철한 공통점이 있지만, 편철된 문서연도의 단위가 다르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거래한 문서량에 따른 차이로 궁내부와는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한 문서량이 많았기 때문에 1~2년을 단위로 편철하였고, 의정부와는 거래한 문서량이 적었기 때문에 11년간 거래한 문서를 한 책으로 편철한 것이다. 호수 37의 문서연도가 1895~1905년에 걸친 이유는 의정부와 11년 동안 거래한 문서를 한 책으로 편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수별 문서연도의 폭이 크고 중복된 이유가 이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문서연도가 1896~1904년에 걸친 호수

38의 경우, 내부·외부·경부는 문서연도가 1896-1900·1898-1900년으로 일정 간격을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1900-1902·1904년의 평리원 문서철이 포함되어 앞뒤 호수와 문서연도가 중복되고, 문서연도의 폭이 커졌다. 호수 39는 1899~1905년에 걸친 장례원의 문서철이 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난 1895~1896년의 내부 문서철이 포함되어 있다. 호수 40의 문서연도가 1897~1905년에 걸쳐 있는 것도 1897-1898·1899-1901·1901-1902·1903-1905년 등 2~3년 단위로 편철된 다양한 연도의 문서철이 함께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호수별로 문서연도가 중복되고 순차적이지 않은 이유가 편철방식에 있는 것만은 아닌 것이다.

지세과의 경우, 호수 34는 1896-1898년, 35는 1897-1900년, 42는 1905-1906년, 43은 1907년으로 문서연도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과 하위단위를 분류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호수 38·39·40은 다양한 연도의 문서가 함께 분류되어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하위단위를 분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호수 34~43 전체를 보면 각 호수별로 문서연도가 중복되고 순차적이지 않아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하위단위를 분류하였다고 파악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지세과가 특정 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각 기관과 거래한 문서를 기능별로 분류하였을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과 단위로 호수가 부여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 내에 기능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다. 각 과는 담당 업무에 따라 분화되므로, 과가 생산·거래한 문서는 각 기관의 업무 기능에 따라 편철·분류되기 마련이다. 과 단위로 호수가 부여된 상태에서 지세과는 여러 호수로 나누어졌으므로 각 호수가 기능별로 세분화되었을 수도 있다.

〈표 5〉 지세과 문서철의 분류도장

번호	도서번호	내별번호	원표제	年數	책수	호수	연호	期滿	문서년월
1	奎 17880	6-3	農商工部電郵費去來牒	20	9	34-1	隆熙	23年	1896.10~1897.12
	奎 17892	1-1	電郵費訓令編案	20	3	41-2	隆熙	23年	1900.1~1901.12
	奎 17876	12-7	訓令編案 電郵司費	20	6	△△	△△	△△	1902.1~1903.11
		12-11	訓令編案 電郵兩司	20	6	39-3	隆熙	23年	1904.5~1905.9
2	奎 17997	4-1	災結請議書 附倭災訓令	20	8	40-1	隆熙	23年	1897.1~1898.7
		4-2	災結請議書 附倭災訓令	20	8	40-2	隆熙	23年	1899.2~1901.4
		4-3	災結請議書 附倭災訓令	20	8	40-3	隆熙	23年	1901.8~1902.1
		4-4	災請議	10	10	2△	×	5△	1903.2~1905.2

* 奎 17880 : 『度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奎 17892 : 『電郵費訓令編案』, 奎 17876 : 『訓令編案』, 奎 17997 : 『災結請議書』

번호 1의 4책은 電報司·郵遞司·전선가설 경비 지급과 관련해 度支部 司計局이 司稅局에 通牒한 문서와 사세국 지세과에서 各府郡의 公錢에서 전보사·우체사 경비를 지급하도록 各府郡에 내린 훈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번호 1은 탁지부 사세국 지세과에서 電報司·郵遞司·전선가설 경비 지급 관련 문서를 편철한 동일한 내용·형식의 문서철인 것이다.¹⁰⁾ 이 4책은 동일한 성격의 문서철이지만, 분류도장을 찍을 당시에는 호수 34-1·39-3·41-2·△△를 부여하여 최소한 3종 이상으로 분류되었다.

번호 2의 4책은 탁지부 사세국 지세과에서 의정부에 災結의 地稅 蠲減과 停稅를 요구한 請議書(1~4책)와 탁지부가 災結에 대한 의정부 지령을 各道에 내린 훈령(1~3책)을 편철한 문서철이다. 災結의 地稅와 관련된 청의서와 지령으로 구성된 동

10) 1번 문서철의 편철과 분류에 대해서는 박성준, 「공문서의 편철과 분류」, 2008a, 347-348쪽 참조

일한 내용의 문서철이지만, 1~4책에 분류도장을 찍고 호수를 부여한 시기가 틀리다. 4-1~3책은 융희년간에 동일한 호수로 분류되었지만, 4-4책은 조선총독부 초기에 다른 호수로 분류되었다. 이 역시 동일한 내용의 문서철이 따로 분류되었다.

동일한 성격의 문서철을 함께 분류하지 않고 각각 다른 호수를 부여하였다는 것은 각 호수가 기능별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세과 문서철에 부여된 호수 34~43의 분류기준을 거래기관·문서연도·기능별 분류 측면에서 살펴보았지만, 특정한 분류기준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호수 34~43은 서로 다른 거래기관·문서연도·성격의 문서철이 혼용되어 분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세과 문서철인 호수 260의 경우를 살펴본다.

〈표 6〉 호수 260 문서철의 거래기관과 문서연월

내별번호	거래기관	年數	책수	호수	문서연월
24-16	軍部·農商工部·外部·內部·警務廳·稅務司·總稅務司	永	25	260-2-口	1895.4~8
24-17	軍部·總稅務司·外部·內部	永	2△	260-2-子	1895.8~1896.2
24-18	軍部·學部·農商工部·外部·內部·總稅務司·宮內府	永	25	260-2-卜	1896.3~6
24-19	軍部·宮內府·農商工部·外部·慶興監理·總稅務司·仁川監理	永	25	260-2-へ	1896.4~1897.12
24-20	軍部·議政府·宮內府·外部·內部·總稅務司·典園局·慶興監理	永	25	260-2-ホ	1898.1~12
24-21	軍部·農商工部·元帥府·總稅務司·典園局·慶興監理	永	25	260-2-ニ	1898.6~1900.1
24-22	軍部·法部·農商工部·內部·外部·總稅務司·學部·通信院·慶興監理·三和監理	永	2△	2△△	1900.1~12
24-23	軍部·法部·農商工部·元帥府·外部·總稅務司·鐵道院	永	△△	2△△	1900.12~1902.3
24-24	軍部·議政府·農商工部·元帥府·外部·總稅務司	永	2△	2△△	1903.1~1904.12

* 도서명과 도서번호: 『度支部各部院等公文來去文』(奎 17877)

호수 260은 조선총독부가 25책을 한 질로 묶고 영구보존대상으로 분류하면서 부여한 것이다. 영구보존대상으로 분류된 25책 가운데 현재 확인된 책 수는 9책뿐이라 한계는 있지만 확인된 부분 내에서 살펴본다.

관세과가 편철한 9책의 각 문서철을 보면 군부·농상공부·외부 등 각부부원청과 거래한 문서가 1-2년을 단위로 편철되어 있다. 관세과는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기관과 거래한 문서를 한 책으로 편철하였던 것이며, 각 문서철의 순서도 연도순으로 순차적으로 배열된다.

조선총독부는 이들 문서철을 한 질로 묶어 ‘260-2’ 호수를 부여하면서 ‘イロハ 歌’ 순서대로 ‘イロハニホヘト チリヌルヲワカ…’를 부여하였다.¹¹⁾ 그런데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イロハ 歌’가 부여된 순서를 보면 ‘260-2-口・チ・ト・へ・ホ・ニ’가 되어 문서연도와 ‘イロハ 歌’의 순서가 맞지 않다. 조선총독부는 관세과 문서철을 따로 분류하고 호수 262를 부여하였지만, ‘イロハ 歌’ 순서가 문서연도와 맞지 않듯이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편철한 방식을 반영하지는 못했다.

다음으로 잡세과 문서철인 호수 262의 경우를 살펴본다.

11) ‘イロハ 歌’의 순서는 ‘イロハニホヘト チリヌルヲワカヨタレソ ツネナラム ウキノオクヤマ ケフコエテ アサキユメシ エヒモセス’이다.

〈표 7〉 호수 262 문서철의 거래기관과 문서연월

번호	도서번호	내별번호	거래기관	年數	책수	호수	期滿	문서연월
1	奎 17882	8-7	宮內府	10	14	262-1-へ	53年	1895.10 ~ 1897.11
2	奎 17877	24-2	法部·軍部·宮內府	10	14	262-1-口	53年	1896.12 ~ 1898.12
3	奎 17877	24-1	掌禮院·外部·內部·法部·學部·漢城裁判所·柏卓安	10	14	262-1-ニ	53年	1897.5 ~ 1899.12
4	奎 17880	6-5	農商工部	10	14	262-1-イ	53年	1898.1~12
5	奎 17878	7-3	軍部	10	14	262-1-ハ	53年	1898.2 ~ 1899.12
6	奎 17880	6-6	農商工部	10	14	262-1-ホ	53年	1899.1~12
7	奎 17877	24-4	議政府·內部·農商工部·法部·通信院·警部·柏札·外部	10	14	262-1-ト	53年	1900.1~12
8	奎 17877	24-3	元帥府·宮內府·內藏院·掌禮院·軍部	10	14	262-1-チ	53年	1900.1 ~ 1901.2
9	奎 17877	24-5	宮內府·元帥府·外部·法部·內藏院·軍部·農商工部·通信院·警部	10	14	262-1-リ	53年	1901.1~12
10	奎 17877	24-6	宮內府·議政府·外部·軍部·內藏院·平理院·營建都監	10	14	262-1-ヌ	53年	1901.10 ~ 1903.11
11	奎 17877	24-8	宮內府·議政府·法部·警務廳·法院·內藏院·掌禮院·農商工部·通信院·司計局·出納局	10	14	262-1-ヲ	53年	1904.3~12
12	奎 17877	24-9	宮內府·經理院·農商工部·通信院·漢城府·外部·法部·平理院·警務廳·議政府·掌禮院	10	14	262-1-ワ	53年	1905.1~12

* 奎 17877: 『度支部各部院等公文來去文』, 奎 17878: 『軍部來去案』, 奎 17880: 『度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奎 17882: 『宮內府來去文牒』

호수 262는 조선총독부가 14책을 한 질로 묶고 호수를 부여한 것인데, 현재 확인된 것은 12책이다.¹²⁾ 잡세과가 편철한 호

12) 호수 262 예상 문서철

도서번호	내별번호	거래기관	年數	책수	호수	期滿	문서연월
奎 17877	24-7	農商工部·通信院	10	△△	△△	5△	1902.1~1904.1
奎 17877	24-15	外部·議政府·仁川監理·總稅務司·目賀田	10	△△	△△	5△	1905.1~1906.12

14책 가운데 나머지 2책이 확인되지 않지만, 위 두 문서철의 호수가 262일 가능성이 높다. 두 문서철의 분류도장은 규장각 도서번호표에 가려 확인할 수 없지만, 다른 문서철과 마찬가지로 편철기관이 잡세과이고 표제가 동일한 ‘公文來去牒’이며 조선총독부에서 분류도장을 찍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호수가 262

수 262의 문서철도 1-2년을 단위로 군부·농상공부·외부 등 여러 기관과 거래한 문서를 한 책에 편철하였다. 여러 기관의 문서가 한 책에 편철되었듯이, 잡세과도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문서를 편철하였다.

다만 1·4·5·6번의 문서철은 단일 기관과 거래한 문서만이 편철되어 있다. 여러 기관과 거래한 문서를 함께 편철하는 방식과 단일 기관 문서만을 편철하는 방식이 병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편철 기준이 달리 적용된 것은 아니다. 1895-1899년 문서철에 두 방식이 함께 나타나듯이(번호 1-6),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편철하였지만 이 기간 동안 농상공부·군부·궁내부와 거래한 문서량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기관 문서와 함께 편철하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이들 문서철을 호수 ‘262-1’로 분류하고 ‘イロハ歌’를 순서대로 부여하였지만, 이 역시 문서연도와 ‘イロハ歌’ 순서가 맞지 않다. 7-12번 ‘トチリヌ(ル)ヲワ’는 문서연도와 순서가 맞지만, 1-6번 ‘へロニイハホ’는 순서가 맞지 않다.

탁지부 왕복문서철에 찍힌 분류도장을 살펴본 결과, 분류도장을 찍을 당시에는 ‘部-局-課’에서 일차적으로 과를 단위로 분류도장을 찍고 호수를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한제국기 공문서 편철·분류 체계와 동일한 것으로, 이 당시까지는 과를 단위로 한 분류체계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과 단위로 구분하고 각 문서철에 호수를 부여하였지만, 과 하위단위의 분류체계는 과별로 차이가 있었다. 지세과 문서철은 한 호수에 여러 기관이 등장하고 문서연도는 앞뒤 호수에서 중복되고 순차적이지 않았으며 같은 성격의 문서철이 따로 분류되어 있었다. 지세과 문서철의 호수에서는 거래 기관·문

일 것으로 보인다.

서연도·기능별 분류 가운데 특정한 분류기준을 확인할 수 없었다. 관세과와 잡세과 문서철은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편철된 방식을 반영하여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호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문서연도와 ‘イロハ 歌’ 순서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분류도장의 분류 상태를 대한제국기 공문서 분류 체계의 원질서로 파악할 수 있을까. 갑오개혁~대한제국기에는 공문서를 과 단위로 편철·분류하였지만, 과 하위단위의 분류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분류도장의 공문서 분류를 대한제국기 공문서 분류의 원질서로 파악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다른 측면을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8〉 분류호수와 문서철 책순서·측면 하단 정보

번호	거래기관	도서번호	내별 번호	책순서	책수	호수	연호	측면 하단	문서년월	課
1	宮内府	奎 17882	8-1	第一	△	△△-3	隆熙	宮 丙申 一	1895.11~1896.7	지 세 과
			8-2	第二	△	34-4	隆熙	宮 丙申 二	1896.8~12	
			8-3	×	△	34-7	隆熙	宮 丁酉	1897.1~1897.12	
			8-5	×	6	39-1	隆熙	宮 自庚子至乙巳	1900.1~1905.10	
2	内部	奎 17881	7-1	第一	△	39-5	隆熙	内 丙申 一	1895.11~1896.7	지 세 과
			7-2	第二	△	39-6	隆熙	内 丙申 二	1896.8~12	
			7-3	×	9	34-2	隆熙	内 丁酉 一	1896.12~1897.7	
			7-4	×	9	34-9	隆熙	内 丁酉 二	1897.8~1897.12	
3	府部聽	奎 17877	24-6	一	14	262-1-ㄱ	×	宮議外軍内平營 光六七	1901.10~1903.11	잡 세 과
			24-7	二	△△	△△	△△	二 農通 光六七	1902.1~1904.1	
4	外部	奎 17889	1-1	×	6	38-5	隆熙	外 丙申丁酉戊戌己亥庚子	1896.2~1900.12	지 세 과

* 奎 17877: 『度支部各部院等公文來去文』, 奎 17878: 『軍部來去案』, 奎 17880: 『度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奎 17881: 『度支部内部公文來去牒』, 奎 17882: 『宮内府去來文牒』, 奎 17889: 『外部來去文』

<표 8>은 각 문서철의 분류 호수 및 문서철의 책순서·측면 하단에 적힌 내용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문서철의 측면 하단에는 문서를 거래한 기관명·문서철의 문서연도·책순서 등이 기록되어 있다.

1번 문서철의 측면 하단에는 ‘宮 丙申 一’·‘宮 丙申 二’라 적혀 있는데, 이는 지세과가 궁내부와 丙申年(1896년)에 거래한 문서의 첫 번째·두 번째 문서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¹³⁾ 1896년에 궁내부와 거래한 문서량이 많아 두 책으로 나누어 편철하면서 문서철의 측면 하단에 책 순서 ‘一’·‘二’를 기록한 것이며, 한 책으로 편철한 丁酉年(1897년)은 따로 책 순서를 기록하지 않았다. 2번 내부와 거래한 문서철 역시 마찬가지다.

3번은 잡세과가 광무 6·7년(1902·1903년)에 각부부원청과 거래한 문서를 두 책으로 편철하면서 내별번호 247 문서철의 측면 하단에 책 순서 ‘二’를 기록하였다. 4번은 지세과가 丙申·丁酉·戊戌·己亥·庚子年(1896-1900년) 5년 동안 외부와 거래한 문서를 한 책으로 편철한 것이다.

1·4번 문서철의 편철 방식을 보면 3번과 4번이 대비된다. 3번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기관과 거래한 문서를 한 책에 편철하였고, 4번은 단일 기관과 몇 년 동안 거래한 문서를 한 책으로 편철하였다.

이런 차이는 과 단위로 문서를 편철하면서 거래기관을 기준으로 편철할 것인지,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편철할 것인지, 편철 기준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3번은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편철하였기 때문에 잡세과가 1902·1903년에 각부부원청과 거

13) <표 8>에는 문서연월이 1895.11~1896.7로 되어 있는데, 1책에 편철된 3번 책 문서 1건만 문서연월이 1895년 11월 13일이다. 이 문서는 궁내부가 탁지부에 照會한 문서로 발신일이 1895년 11월 13일이고, 조회에 대해 탁지부가 답신한 照覆은 발신일이 1896년 1월이라, 1896년도 문서철에 포함된 것이다.

래한 문서를 한 책으로 편철하였던 것이며, 4번은 거래 기관을 기준으로 편철하였기 때문에 지세과가 외부와 몇 해에 걸쳐 거래한 문서를 한 책으로 편철한 것이다.

1번은 지세과가 궁내부와 거래한 문서를 편철한 것으로 내별번호 8-1·2·3은 단일 기관·단일 연도의 문서만을 편철하였기 때문에 거래기관 또는 문서연도 모두가 편철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별번호 8-5가 1900~1905년 6년간 궁내부와 거래한 문서를 한 책으로 편철하였듯이, 내별번호 8-1·2·3은 거래기관을 기준으로 편철한 것이다. 이는 2번의 내부와 거래한 문서철도 마찬가지다.

다만 지세과의 경우, 1905년부터 잡세과와 관세과처럼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여러 기관과 거래한 문서를 한 책에 편철하였는데, 1905년부터 편철 기준이 거래 기관에서 문서연도로 변경된 것으로 보여진다(<표 3> 9번 참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한제국기 문서 편철 방식이 거래 기관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한 경우로 구분된다는 점이고, 두 경우 모두 연속된 문서철이 두 책으로 나누어 편철될 경우 책 순서 ‘一’·‘二’를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두 책으로 나누어 편철하면서 책 순서 ‘一’·‘二’를 부여한 것은 두 문서철이 서로 연속된 문서철로 함께 분류되었음을 의미한다.

1번의 丙申年(1896년) 문서철의 내별번호 8-1은 문서연월이 1896년 1-7월이고, 8-2는 1896년 8-12월로 서로 연속된다. 두 문서철이 연속된 것임은 문서 한 건마다 찍혀 있는 접수 도장과 발송 도장에서도 확인된다.

탁지부는 궁내부로부터 받은 문서에는 접수 도장을 찍었고, 궁내부로 보낸 문서에는 발송 도장을 찍었다. 1·2책에 찍힌

발송 호수를 보면, 8-1의 맨 마지막 문서와 8-2의 첫 문서의 발송 호수가 74호와 75호로 연속된다.¹⁴⁾ 연속된 1896년도 문서를 두 책으로 편철하였기 때문에 문서철의 측면 하단에 ‘宮 丙申 一’·‘宮 丙申 二’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두 책으로 나뉜 문서철에 부여된 호수를 보면 내부와 거래한 丙申年(1896년) 문서철에는 호수 ‘39-5’·‘39-6’이, 丁酉年(1897년) 문서철에는 호수 ‘34-2’·‘34-9’가 각각 부여 되어 같은 호수에 함께 분류되었다. 丙申年·丁酉年 문서철이 각각 함께 분류되기는 했지만, 같은 기관과 거래하고 문서연도가 1896년과 1897년으로 연속된 문서철이 호수 34와 39로 따로 부여되어 있어, 전체적인 분류체계에서 본다면 거래기관·문서연도에 상관없이 분산되어 분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번 궁내부와 거래한 丙申年(1896년) 문서철에는 호수 ‘△△-3’·‘34-4’가 부여되었는데, 호수 ‘△△-3’의 앞 부분은 도서번호 표에 가려져 확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3’의 호수가 ‘34-3’은 아니다. 호수 ‘34-3’은 농상공부와 거래한 문서 奎 17880, 내별번호 6-4에서 확인된다(<표 3> 1번 참조). ‘△△-3’의 호수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호수 34와는 다른 호수인 것이다. 지세과는 궁내부와 거래한 1896년도 문서를 두 책으로 나누어 편철하면서 연속된 문서철로 분류하였지만, 분류도장을 찍을 때에는 ‘△△-3’·‘34-4’로 각각 다른 호수를 부여하여 따로 분류하였던 것이다.

대한제국기에는 과를 단위로 문서연도 또는 거래 기관을 기준으로 문서를 편철하면서, 같은 해의 문서가 두 책으로 편철

14) 2책의 첫 문서 발송 호수 75호는 발송 도장이 아닌 접수 도장에 적혀 있다. 그러나 이 도장은 궁내부 105호 조회에 답신한 조복 문서에 찍혀 있고, 다음 발송 호수인 76호와도 연속된다. 접수 도장을 발송 도장으로 잘못 찍은 것이다.

된 경우에는 연속된 문서철임을 표시하기 위해 책순서 ‘一’, ‘二’를 부여하고 함께 분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류도장을 찍고 호수를 부여할 때 연속된 문서철이 따로 분류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분류도장의 문서 분류가 대한제국기 문서 분류체계의 원질서를 유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지세과 문서철 호수 34~43에서 문서연도·거래 기관·기능별 분류체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도 대한제국기 공문서의 편철 방식을 반영하여 호수가 부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분류도장은 융희년간부터 찍었지만, 그 대상은 갑오개혁~광무년간에 생산된 문서철까지 포괄하였으며, 이들 문서철에 분류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 분류체계가 해체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제국기 공문서의 과 하위단위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었던 것인가. 문서 편철체계가 곧 분류체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편철 방식은 문서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과 하위단위의 분류기준이 거래 기관인데, 관세과·잡세과처럼 여러 기관과 거래한 문서를 한 책에 편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제국기 과 하위단위의 분류체계는 편철 방식에서 나타나듯이 ‘과 - 거래기관’과 ‘과 - 문서연도’ 두 체계로 구분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지세과의 문서철은 거래기관을 기준으로 편철되었기 때문에 분류체계도 ‘과 - 거래기관’ 체계로 분류되었을 것이고, 관세과와 잡세과의 문서철은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편철되었기 때문에 분류체계는 ‘과 - 문서연도’ 체계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3. 창고번호도장의 문서철 분류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기 각부부원청에서 생산·보존한 공문서를 인계받고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각 문서철에 창고번호도장을 찍었다. 창고번호도장을 찍은 문서철은 분류도장이 찍힌 재정 관련 문서철뿐 아니라 대한제국기 각부부원청 공문서철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림〉 창고번호도장

	番倉 號庫
	番棚 號架
	記 號

창고번호도장은 ‘倉庫番號·棚架番號·記號’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고번호는 문서를 보관한 각 창고별 번호를, 봉가번호는 창고에 있는 서가 번호를, 기호는 서가에 배열한 문서철의 순서로 ‘イロハ歌’ 순으로 기호를 부여하였다.

현재 확인된 창고 번호는 1·3·5·6번이며, 봉가번호도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모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결번이 많다. 각 창고별로 보관된 문서철을 보면, 1번 창고에 보관된 문서철은 내부에서 편철한 『內部外部往來公牒摘要』(奎

18021, 2책), 『外各府郡公牒摘要』(奎 18022의 1), 『外各府郡公牒存案』(奎 18022의 2) 4책뿐이고 나머지 문서철은 3·5·6번 창고에 보관된 것이다.

3번 창고에 보관된 문서철은 탁지부 문서철과 황실 재정 관련 문서철로 구분된다. 서가 13·24·28·30·32·35·44·72번에는 『公文編案』(奎 18154), 『訓令存案』(奎 18153), 『奏本奏下存案』(奎 18150), 『全羅北道各郡結戶錢放』(奎 19336), 『解由規則』(奎 20358) 등 주로 탁지부에서 편철·보존한 왕복문서철과 일부 대장류가 보관되었다.¹⁵⁾

117번 서가부터는 『訓令照會存案』(奎 19143), 『各府郡來牒』(奎 19146), 『京畿各郡報告』(奎 19147), 『京畿各郡訴狀』(奎 19148) 등 내장원(이후 경리원)이 중앙·지방과 거래한 문서철과 내장원이 관리한 역둔토성책, 명례궁·수진궁 등 각 궁방이 관리한 捧上冊·上下冊 같은 회계장부류, 황실재정을 정리하기 위해 설치된 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臨時財産整理局에서 1司 7宮을 폐지한 뒤 導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편철한 『導掌決定原案』(奎 21031), 『京畿道庄土文績』(奎 19299) 등 도장 관련 문서철과 『於義宮ニ供給セシ物品代金請求ノ件』(奎 21693)같은 帝室債務관련 문서철 등이 보관되었다.¹⁶⁾

3번 창고의 앞 부분은 탁지부 문서철이, 뒤 부분은 1사 7궁과 내장원이 관리한 재정 관련 문서철과 황실 재정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과 임시재산정리국이 관리한 황실 관련 문서철이 보관된 것이다.

5번 창고에는 주로 탁지부가 관리한 국가 재정 관련 문서철이 보관되었다. 갑오개혁 이전·이후 문서철이 일부 혼용되어

15) 1~72번 불가번호 가운데 본문에 없는 번호는 결번이다.

16) 72번부터 172번 사이의 불가번호는 결번이다.

있었지만 크게 23번 서가까지는 주로 갑오개혁 이전 문서철이, 24번부터는 갑오개혁 이후 문서철이 보관되었다.

5번 창고의 2번에서 23번 서가까지는 『全羅道三漕倉漕需用遺在會計成冊』(奎 19411), 『江原道洪川縣都會嶺西十六邑今壬辰條收租案』(奎 19529), 『江原道原州牧都會道內各邑去冬三朔各衙門還上用下成冊』(奎 19448), 『賑恤廳會計冊』(奎 19401), 『湖西廳上下冊』(奎 19498), 『仁川港銀號所收海關進出口稅銀數目及經費計開』(奎 19364의 3) 등 주로 갑오개혁 이전의 결세·환곡·대동미·해관 관련 문서철이 보관되었다.

24번 서가부터는 『度支部各項奉上調查抄錄』(奎 19361), 『度支部各項用下調查抄錄』(奎 19369), 『慶尙南北道各公土執摠案』(奎 19543), 『京釜鐵道用地金額及結數成冊』(奎 19365), 『咸鏡南道各郡收租案』(奎 16678), 『京畿道各郡所在各屯土調查成冊』(奎 19550) 등 갑오개혁 이후의 국가 재정 관련 문서철이 보관되었다.

6번 창고의 경우 1-66번 서가에는 국가 재정 관련 문서철이, 80번 서가부터는 외부와 의정부(내각) 문서철이 보관되었다. 재정 관련 문서철의 경우 1-42번 서가에는 광무 양안, 43-66번 서가에는 주로 『慶尙北道長鬐郡牧驛田畝永定賭稅成冊』(奎 17912의 12), 『慶尙南道各郡乙巳條年分摠計』(奎 17924), 『慶尙南道晋州郡家戶案』(奎 17944) 등 역둔토·결세·家戶와 관련된 문서철이 보관되었지만, 48번과 51번 서가에 『京畿道水原郡量案』(奎 17651), 『龍仁郡量案抄』(奎 17645) 등 광무양안이 섞여 있었고, 55-61번 서가에는 『訓令編案』(奎 17876), 『度支部各部院等公文來去文』(奎 17877) 등 탁지부가 다른 기관과 거래한 왕복 문서철이 보관되었다.

80번 서가부터는 외부와 의정부(내각) 문서철이 보관되었는

데, 외부와 의정부 문서철이 전후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외부와 의정부 문서철이 혼용되어 있었다. 80-99번 서가에는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奎 17836), 『京畿關草』(奎 18067), 『外務衙門日記』(奎 17838), 『美原案』(奎 18046의 1) 등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과 외부 문서철이 보관되었고, 108-115번 서가에는 『奏本』(奎 17703), 『議政府會議標題』(奎 17759) 등 의정부 문서철이 보관되었으며, 116-142번 서가에는 다시 외부, 144-145번 서가에는 의정부 문서철이 보관되어 의정부와 외부 문서철이 혼용되어 보관되었다. 그리고 213-214번 서가에는 『京畿道龍仁郡量案』(奎 17644), 『京畿安山郡量案』(奎 17654), 『忠淸南道石城郡量案』(奎 17670) 광무양안이 보관되었다.

3·5·6번 각 창고별로 보관된 문서철을 보면, 3번 창고의 앞 서가는 탁지부, 뒤 서가는 궁방·내장원·임시재산정리국, 5번 창고는 탁지부, 6번 창고는 양지지계아문·탁지부·외부·의정부 문서철이 보관되어, 각 창고별로 문서를 편철한 기관이 대체적으로 구분되어 보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서가에 배열된 순서를 살펴본다.

〈표 9〉 서가 번호와 분류 호수

도서번호	내별번호	도서명	창고	봉가	기호	年數	책수	호수
奎 17877	24-10	度支部各部院等公文來去文	6	58	이1	20	△	42-1
奎 17877	24-12	度支部各部院等公文來去文	6	58	이3	20	△	42-3
奎 17881	7-1	度支部内部公文來去牒	6	58	이4	20	△	39-5
奎 17881	7-2	度支部内部公文來去牒	6	58	이5	20	△	39-6
奎 17892	1-1	電郵費訓令編案	6	58	이6	20	3	41-2
奎 17876	12-11	訓令編案	6	58	이7	20	6	39-3
奎 17881	7-7	度支部内部公文來去牒	6	58	이10	20	3	41-3
奎 17882	8-5	宮内府去來文牒	6	58	이11	20	6	39-1
奎 17995	6-3	報告書綴	6	58	하28	20	6	43-△
奎 17891	4-2	通牒	6	58	나1	20	5	36-1
奎 17878	7-1	軍部來去案	6	61	로1	20	9	34-5
奎 17884	4-1	法部來去文	6	61	로2	20	9	34-8
奎 17887	×	議政府來去案	6	61	로3	20	5	37-1
奎 17885	2-1	掌禮院去來牒	6	61	로4	20	9	34-6
奎 17881	7-4	度支部内部公文來去牒	6	61	로5	20	9	34-9
奎 17882	8-3	宮内府去來文牒	6	61	로7	20	△	34-7
奎 17882	8-2	宮内府去來文牒	6	61	로8	20	△	34-4
奎 17877	24-13	度支部各部院等公文來去文	6	61	로9	20	5	37-5
奎 17880	6-3	度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6	61	로10	20	9	34-1
奎 17880	6-1	度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6	61	로13	20	5	37-△
奎 17888	2-2	警部來去文	6	61	하1	20	8	40-6
奎 17890	×	漢城裁判所來去文	6	61	하3	20	8	40-5
奎 17997	4-1	災結請議書	6	61	하4	20	8	40-1
奎 17997	4-2	災結請議書	6	61	하5	20	8	40-2
奎 17997	4-3	災結請議書	6	61	하6	20	8	40-3
奎 17889	1-1	外部來去文	6	61	하7	20	6	38-5
奎 17886	2-1	警務廳來去文	6	61	하8	20	6	38-6
奎 17882	8-4	宮内府去來文牒	6	61	하9	20	6	35-4
奎 17878	7-7	軍部來去案	6	61	하10	20	8	40-8
奎 17878	7-2	軍部來去案	6	61	하11	20	△	35-1
奎 17881	7-5	度支部内部公文來去牒	6	61	하12	20	6	35-2
奎 17881	7-6	度支部内部公文來去牒	6	61	하13	20	6	38-3
奎 17884	4-4	法部來去文	6	61	하14	20	8	40-7
奎 17884	4-2	法部來去文	6	61	하15	20	6	35-3
奎 17884	4-3	法部來去文	6	61	하16	20	6	35-6
奎 17883	4-1	平理院來去文	6	61	하17	20	6	35-5
奎 17883	4-4	平理院來去文	6	61	하18	20	6	38-1
奎 17883	4-3	平理院來去文	6	61	하19	20	6	38-2
奎 17883	4-2	平理院來去文	6	61	하20	20	6	38-4

서가에 배열된 문서철은 대체적으로 분류도장의 호수 순이

었지만, 일부 문서철은 호수가 뒤섞여 서가에 배열되어 서가와 호수 순서가 맞지 않다. <표 9>를 보면 58번 서가에는 호수 36·39·41·42·43의 문서철이 보관되었고, 61번 서가에는 호수 34·35·37·38·40의 문서철이 보관되었다. 서가별로 호수가 구분되지만 서가와 호수 순서가 순차적으로 배열되지는 않는다. 61번 서가에 보관된 호수 34·35·37·38 다음은 호수 39가 배열되어야 하지만, 호수 39는 58번 서가에 보관되었다.

서가에 문서철을 배열한 다음 각 문서철에 ‘イロハ+숫자’ 형식으로 기호를 부여했는데, 같은 서가에 보존된 문서철을 보면 기호와 호수 순서가 맞지 않다. 58번 서가에 배열된 문서철의 기호와 호수를 보면 이1·42-1(기호·호수), 이3·42-3, 이4·39-5, 이5·39-6, 이6·41-2, 이7·39-3이고, 61번 서가에 배열된 문서철은 하7·38-5, 하8·38-6, 하9·35-4, 하10·40-8, 하11·35-1, 하12·35-2, 하13·38-3으로 기호와 호수 순서가 맞지 않다.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기 공문서철에 창고번호·봉가번호·기호를 부여하고, 창고별로 각 기관을 구분하여 대체적으로 호수 순으로 서가에 문서를 보관하였다. 그러나 일부 문서철은 호수가 뒤섞여 서가와 호수 순서가 맞지 않았고, 같은 서가의 문서철에 부여된 기호도 호수가 뒤섞여 부여되었다.

또한 6번 창고에는 의정부와 외부 문서철이 함께 보관되었는데, 이는 1906년 1월 외부가 議政府 外事局으로 변경되면서 의정부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¹⁷⁾ 그런데 6번 창고의 서가에는 외부와 의정부 문서철이 전후로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어 보관되었다. 이는 의정부 외사국 문서철(곧 외부 문서철)과 의정부 다른局的 문서철을 局課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서가에

17) 『韓末近代法令資料集』IV, 「勅令第5號 外部官制 改正」, 1906.1.17, 497-498쪽

배열하였기 때문이다.

각 창고에 문서철을 보관하고 서가에 배열하는 과정에서 호수가 뒤섞이고, 局課 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배열하였듯이, 창고번호도장을 찍고 서가에 배열하는 과정에서 분류도장의 분류체계가 해체되고 있었던 것이다.

창고번호도장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분류도장에서 각 문서철에 부여한 보존기간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 10〉 서가 번호와 보존연수

도서번호	내별번호	창고	봉가	기호	年數	책수	호수
奎 17877	24-2	6	57	이1	10	14	262-1-口
奎 17878	7-3	6	57	이2	10	14	262-1-ハ
奎 17880	6-5	6	57	이3	10	14	262-1-イ
奎 17882	8-7	6	57	이5	10	14	262-1-ヘ
奎 17880	6-6	6	57	이6	10	14	262-1-ホ
奎 17877	24-15	6	57	이8	10	△△	△△
奎 17877	24-7	6	57	이9	10	△△	△△
奎 17877	24-9	6	57	이10	10	14	262-1-フ
奎 17877	24-6	6	57	이11	10	14	262-1-ヌ
奎 17877	24-3	6	57	이12	10	14	262-1-チ
奎 17877	24-5	6	57	이13	10	14	262-1-リ
奎 17877	24-24	6	57	이15	永	2△	2△△
奎 17877	24-21	6	57	이16	永	25	260-2-ニ
奎 17877	24-20	6	57	이17	永	25	260-2-ホ
奎 17877	24-16	6	57	이18	永	25	260-2-口
奎 17877	24-22	6	57	ろ1	永	2△	2△△
奎 17877	24-23	6	57	ろ2	永	△△	2△△
奎 17997	4-4	6	57	ろ3	10	10	2△△
奎 17888	2-1	6	57	ろ4	10	△△	2△△
奎 17878	7-5	6	57	ろ5	10	1△	26△
奎 17878	7-4	6	57	ろ6	10	△△	△△
奎 17879	5-2	6	57	ろ7	10	△△	△△
奎 17879	5-4	6	57	ろ8	10	△△	△△
奎 17879	5-5	6	57	ろ9	10	△△	2△△
奎 17878	7-6	6	57	ろ10	10	△△	2△△
奎 17879	5-3	6	57	ろ11	10	△△	△△
奎 17879	5-1	6	57	ろ12	10	△△	2△△

奎 17877	24-17	6	57	に15	永	2△	260-2-チ
奎 17877	24-18	6	57	に16	永	25	260-2-ト
奎 17877	24-19	6	57	に17	永	25	260-2-ヘ
奎 20227	×	6	57	に18	10	63	270-1-37

<표 10>은 6번 창고 57번 서가에 보관된 호수 260·262·270과 확인되지 않는 △△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각 호수의 보존년수를 보면, 호수 260은 보조기간이 영으로 영구보존대상 문서철이고, 나머지 호수는 보존기간이 10년으로 10년간 보존되다 폐기될 문서철이다. 보존기간이 영·10년으로 다르지만, 서가에 배열된 상태는 보존기간의 구분 없이 같은 서가에 뒤섞여 기호가 부여되었다.

보존기간은 문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문서가 지닌 역사적·행정적 가치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보존하다 폐기할지, 영구보존할지가 결정된다.¹⁸⁾ 분류도장을 찍고 보존기간을 부여하였을 당시에는 대한제국기 공문서철의 가치를 평가해 폐기대상과 영구보존대상을 구분하였다.¹⁹⁾ 그런데 창고번호도장에서는 보존기간이 다른 문서철을 같은 서가에 뒤섞어 함께 보관하였다. 이는 보존기간에 상관없이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를 모두 동일한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기에 생산된 공문서를 局-課-업무-편철명과 보존기간을 각각 연동시켜 편철보존하였지만,²⁰⁾ 창고번호도장에서는 ‘보존 종별’에 상관없이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를 모두 동일한 대상으로 취급하고 같은 서가에 보관함에 따라, 각 문서철에 부여된 보존기간이 더 이상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되었다. 이는 창고번호도장을 찍을 당시 대한제국

18) 이상민, 「영구보존문서의 선별과 가치평가」 『기록보존』14, 2001, 87-90쪽

19) 박성준, 「보존기간 起算과 책정 기준」, 2009, 273-285쪽

20) 이경용,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 『기록학연구』10, 2004, 271쪽

기 공문서에 대한 가치 평가가 변경된 것임을 의미한다. 대한제국기 문서철을 행정적 가치에 따라 폐기해야 할 일반 행정 문서와는 다른 문서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明治43年 日韓併합을 본다면, 寺內總督은 施政을 시작할 즈음에 半島 民衆에게 적절한 新政을 행하려 한다면 먼저 종래의 政治形體와 관습을 아는 것이 필수라 하여 取調局을 설치해 이들을 조사연구하게 하였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時勢에 순응한 제도를 정한다고 함에 따라서 舊慣 및 制度 調査事業은 갑자기 중요한 지위를 점함에 이르렀다’고 하듯이,²¹⁾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고 식민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舊慣制度調査事業’을 추진하였다.²²⁾

한국을 병합한 뒤, 조선총독부 취조국은 한국의 舊制度慣習의 조사 범위를 확장하면서 한국정부소장 도서를 인계 받고 정리에 착수하였다.²³⁾ 이후 ‘구관제도조사사업’을 인계한 조선총독부 참사관실은 ‘本府參事官室에 소장된 舊韓國政府 및 궁내부에서 계승한 圖書, 아울러 奉化 및 五臺山書庫의 서적은 방대하여 考古의 材料로 삼을 만한 것이 물론 적지 않다 하더라도 사료의 수집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감인 점이 많다’며 金石文 같은 考事 자료도 수집하였다.²⁴⁾

조선총독부는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구관제도조사사업’을 시행하며 각종 도서를 수집·정리하고 각지의 관습을 조사하였던 것이며, 이 과정에서 대한제국기 공문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폐기되어야 할 행정 문서가 아

21) 조선총독부중추원,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 1938, 2쪽

22) 김태웅, 「191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의 取調局·參事官室과 ‘舊慣制度調査事業’」 『규장각』16, 1993, 99쪽

23) 조선총독부중추원,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 1938, 23-24쪽

24) 조선총독부중추원, 같은 책, 40-41쪽

니라, 식민 통치에 필요한 ‘考古의 材料’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일반 행정문서에서 식민 통치에 필요한 ‘考古의 材料’로 문서의 가치 평가가 전환되면서, 각 문서철에 부여된 보존기간에 상관없이 대한제국기 각부부원청 공문서를 모두 동일한 대상으로 취급하여 함께 보관하였던 것이다.

분류도장의 문서 분류에서도 확인되듯이 대한제국기 문서 분류체계는 ‘部-局-課’에서 과를 단위로 문서를 편철·분류하였다. 국가 행정기구의 기능과 역할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그 업무에 맞게끔 각각의 局課가 설치되고, 각 과는 담당 업무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된다. 따라서 과를 최소 단위로 한 기관별 편철·분류체계는 그 자체에 기능별 분류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考古의 材料’로 활용하기 위해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를 창고에 보관하고 정리하면서 대한제국기의 분류체계나 분류도장의 분류체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재분류하였다. 창고번호도장에서는 각 창고별로 문서 편철 기관을 대체적으로 구분하여 문서철을 보관했지만, 문서철이 서가에 배열되는 과정에서 호수가 뒤섞이고 局課 단위가 구분되지 않아 국과별 분류체계가 해체되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기의 과를 단위로 한 분류체계를 ‘탁지부와 군부’·‘탁지부와 궁내부’처럼 부와 部를 연계한 부 단위로 재분류함으로써 대한제국기의 과를 단위로 한 기관별 분류체계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기능별 분류의 성격도 해체하였다.²⁵⁾

25) 박성준, 「공문서의 편철과 분류」, 2008a, 343쪽

4. 맺음말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면서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는 조선총독부 참서관실로 인계되어 課 단위의 분류체계에서 部 단위로 재분류되었지만, 이미 그전에 몇 번의 재분류과정을 거쳤다.

분류도장에서는 ‘部-局-課’에서 과를 단위로 문서철을 구분하고 분류도장을 찍고 호수를 부여하였다. 호수 34~43은 사세국 지세과, 호수 260은 사세국 관세과, 호수 262는 사세국 잡세과가 각부부원청과 거래한 문서를 편철한 문서철에 부여되었다. 이는 대한제국기 공문서 편철·분류체계와 동일한 것으로, 분류도장을 찍을 당시까지도 과를 단위로 한 분류체계는 유지되었다.

분류도장은 과 단위로 구분하고 각 문서철에 호수를 부여하였지만, 과 하위단위의 분류체계는 과별로 차이가 있었다. 지세과 문서철은 한 호수에 여러 기관이 등장하고 문서연도는 앞뒤 호수에서 중복되고 순차적이지 않았으며 같은 성격의 문서철이 따로 분류되어 있었다. 지세과 문서철의 호수에서는 거래 기관·문서연도·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체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관세과와 잡세과 문서철은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편철된 두 과의 편철 방식을 반영하여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호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문서연도와 ‘イロハ 歌’ 순서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갑오개혁~대한제국기에는 공문서를 과 단위로 편철하도록 규정하였지만, 과 하위단위의 분류규정이 없어 분류도장의 문서철 분류를 대한제국기 공문서 분류체계의 원질서로 파악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편철 방식은 문서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편철 방식을 통해 대한제국기 과 하위단위의 분류체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대한제국기 공문서 편철 방식은 거래 기관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한 경우로 구분되었고, 두 경우 모두 연속된 문서철이 두 책으로 나누어질 경우 책 순서 ‘一’·‘二’를 부여하였다. 두 책으로 나누어 편철하면서 책 순서 ‘一’·‘二’를 부여한 것은 연속된 두 문서철을 함께 분류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류도장은 함께 분류되어야 할 두 문서철에 각각 다른 호수를 부여하여 따로 분류하였다. 지세과 문서철 호수 34~43에서 연도·거래 기관·기능별 분류체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대한제국기 공문서의 편철·분류체계를 반영하여 호수가 부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편철 방식을 통해 대한제국기 과 하위단위의 분류체계를 추론해 본다면, 분류체계는 ‘과 - 거래기관’과 ‘과 - 문서연도’ 두 체계로 구분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지세과의 문서철은 거래 기관을 기준으로 편철되었기 때문에 ‘과 - 거래기관’ 체계로 분류되었을 것이고, 관세과와 잡세과의 문서철은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편철되었기 때문에 ‘과 - 문서연도’ 체계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기 각부부원청에서 생산·보존한 공문서를 인계받고 창고에 보관하면서, 각 문서철에 창고번호도장을 찍었다. 창고번호도장을 찍은 문서철은 분류도장이 찍힌 재정 관련 문서철뿐 아니라 대한제국기 각부부원청 공문서철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창고번호도장은 대체적으로 각 창고별로 문서를 편철한 기

관을 구분하여 문서철을 보관하였다. 각 창고의 서가에도 대체적으로 분류도장 호수 순으로 문서철을 배열하였지만, 일부 문서철은 호수가 뒤섞여 서가에 배열되어 서가와 호수 순서가 맞지 않았고, 局課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서가에 배열하였다. 서가에 문서철을 배열한 다음 각 문서철에 ‘イロハ 歌’ 순으로 기호를 부여했지만, 기호 역시 호수 순으로 부여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총독부가 각 창고에 문서철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류도장의 분류체계가 해체되고 있었던 것이다.

창고번호도장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분류도장에서 각 문서철에 부여한 보존기간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존기간은 문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문서가 지닌 역사적·행정적 가치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보존하다 폐기할지, 영구보존할지가 결정된다. 분류도장을 찍고 보존기간을 부여하였을 당시에는 대한제국기 공문서철의 가치를 평가해 폐기대상과 영구보존대상을 구분하였다. 그런데 창고번호도장에서는 보존기간이 다른 문서철을 같은 서가에 뒤섞어 함께 배열하였다. 이는 보존기간에 상관없이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를 모두 동일한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고 식민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舊慣制度調査事業’을 추진하면서, 대한제국기 공문서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폐기되어야 할 행정 문서가 아니라, 식민 통치에 필요한 ‘考古의 材料’로 취급하였다.

일반 행정문서에서 식민 통치에 필요한 ‘考古의 材料’로 문서의 가치 평가가 전환되면서, 각 문서철에 부여된 보존기간에 상관없이 대한제국기 각부부원청 공문서를 모두 동일한 대상으로 취급하여 함께 보관하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에 필요한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를 재정리하면서 部를 단위로 재분류함으로써 대한제국기의 課를 최소 단위로 한 기관별 분류체계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기능별 분류의 성격도 해체하였다.

ABSTRACT

The Classification arranged from Protectorate period to the early Japanese Colonial rule period : for Official Documents during the period from Kabo Reform to The Great Han Empire - Focusing on Classification Stamp and Warehouse Number Stamp -

Park, Sung-Joon

As Korea was merged into Japan, the official documents during Kabo Reform and The Great Han Empire time were handed over to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and reclassified from section based to ministry based. However they had been reclassified before many times. The footprints of reclassification can be found in the classification stamps and warehouse number stamps which remained on the cover of official documents from Kabo Reform to The Great Han Empire.

They classified the documents by Section i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Ministry-Department-Section, stamped and numbered them. It is consistent with the official document classification system in The Great Han Empire, which shows the section based classification was maintained.

Although they stamped by Section and numbered the documents, there were differences in sub classification system by Section. In the documents of Land Tax Section, many institutions can be found. The documents of the same year can be found in different group and documents of similar

characteristics are classified in the same group. Customs Section and Other Tax Section seemed to number their documents according to the year of documents. However the year and the order of ‘i-ro-ha(이로하)’ song’ does not match.

From Kabo Reform to The Great Han Empire the documents were grouped by Section. However they did not have classification rules for the sub units of Section. Therefore, it is not clear if the document grouping of classification stamps can be understood as the original order of official document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Great Han Empire. However, given the grouping method reflects the document classification system, the sub section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Great Han Empire can be inferred through the grouping method. In this inference, it is understood that the classification system was divided into two such as ‘Section – Counterpart Institution’ and ‘Section – Document Issuance Year’.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took over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Great Han Empire, stored them in the warehouse and marked them with Warehouse Number Stamps. Warehouse Number Stamp contained the Institution that grouped those documents and the documents were stored by warehouse. Although most of the documents on the shelves in each warehouse were arranged by classification stamp number, some of them were mixed and the order of shelves and that of documents did not match. Although they arranged the documents on the shelves and gave the symbols in the order of ‘i-ro-ha(이로하)’ song’, these symbols were not given by the order of number. During the storage of the documents by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the class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tamps was affected.

One characteristic that can be found in warehouse number stamps is

that the preservation period on each document group lost the meaning. The preservation period is decided according to the historical and administrative value. However, the warehouse number stamps did not distinguish the documents according to the preservation period and put the documents with different preservation period on one shelf.

As Japan merged Korea, The Great Han Empire did not consider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Great Han Empire as administrative documents that should be disposed some time later. It considered them as materials to review the old which is necessary for the colonial governance. As the meaning of the documents has been changed from general administrative documents to the materials that they would need to govern the colony, they dealt with all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Great Han Empire as the same object regardless of preservation period.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destroye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Great Han Empire which was based on Section and the functions in the Section by reclassifying them according to Ministry when they reclassified the official documents during Kobo Reform and the Great Han Empire in order to utilize them to govern the colony.

Key words: Kobo Reform, The Great Han Empire,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The Official Documents, The document classification system